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77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신고포상제는 상습적·은폐된 불법행위를 시민의 참여로 적발하기 위한 보완 수단이나, 포상금 지급을 전제로 경미한 사항까지 반복된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포상금 지급대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
- 나. 신고대상 관련법령 및 위반행위 정비 (안 제1조 및 안 별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삭제
 -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9종 → 5종)
- 다. 포상금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3. 10. ~ 2026. 3. 30.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나) 경 기 도 : 택시교통과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대중교통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대중교통과장 박 준
	팀장 직위·성명	택시화물팀장 한 규 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윤 은 희(☎5472)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제2조 및 제4조 관련)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신고포상금	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20만원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0만원	
3.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20만원	
4.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0만원	
5.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1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u>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과 「<u>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u>」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별표 2</u>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8조(환수) <u>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u>	<u>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u> 제1조(목적)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 ----- -----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 ----- <u>별표</u>-----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금 환수) <u>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u>

[별표 1]

신고대상 위반행위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비고
1. 법인택시의 명의 이용금지 위반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3.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 거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제1호	
5. 법인·개인택시의 미터기 미사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제2호	
6.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8.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 및 제85조 제1항제21호	
9.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관내 불법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
(제2조 및 제4조 관련)**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신고 포상금	비고
1. 법인택시의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20만원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0만원	
3.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20만원	
<삭 제>			
<삭 제>			
4.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0만원	
5.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10만원	
<삭 제>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E-mail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위치(위반장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 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 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E-mail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위치(위반장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 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 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5. 27., 2015. 6. 22.>

(이하생략)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중략)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이하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생략)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 1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별표 1]

신고대상 위반행위

신고대상 위반행위	관계 법률 조항	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3.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 거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제1항제1호	
5. 법인·개인택시의 미터기 미사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제1항제2호	
6.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8.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 및 제85조제1항제21호	
9.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관내 불법영업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별표 2]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위반행위 신고내용	신고포상금	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만원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0만원	
3.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20만원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 거부	5만원	
5. 법인·개인택시의 미터기 미사용	10만원	
6.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영업 행위	10만원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	10만원	
8.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5만원	
9. 타 사업구역 택시의 김포시 관내 불법영업행위	1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E-mail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위치(위반장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첨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그 밖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위반행위 입증자료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김포시장 귀하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일	신 고 인			피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처분 결과	포상금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명 (업체명)	차량번호					
				주 소		주 소			지급일	금액	